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이은빈

변론 종결2024. 5. 3.

판결 선고2024. 5.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25,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0,78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평택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1)는 유기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2. 6. 27. 유기그릇류 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대금조로 다음과 같이 선금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1	2022. 6. 30.	25,200,000	D	D
2	2022. 7. 25.	21,000,000	D	D
3	2022. 7. 29.	11,488,816	D	D
4	2022. 8. 10.	25,000,000	D	D
5	2022. 8. 12.	6,000,000	D	F
6	2022. 8. 18.	6,633,176	D	F
7	2022. 9. 2.	5,000,000	I	F
합계	100,321,992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00,321,992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22. 7. 1.부터 2022. 9. 6.까지 사이에 합계 61,096,920원(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기제품을 공급함으로써 39,225,072원(= 100,321,992원 - 61,096,920원) 상당의 유기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미공급 물품대금 39,225,072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금원에 피고가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던 21,564,338원을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모두 60,789,410원(= 39,225,072원 + 21,564,338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78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7. 1.부터 2022. 7. 27.까지 사이에 유기제품 24,907,9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2022. 8. 1.부터 2022. 8. 10.까지 사이에 유기제품 33,314,4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2022. 9. 1.부터 2022. 9. 6.까지 사이에 유기제품 2,874,4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등 합계 61,096,920원(= 24,907,980원 + 33,314,470원 + 2,874,470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22. 9. 6.의 공급 이후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약정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100,321,992원에서 피고가 공급을 완료한 물품의 대금 상당액인 61,096,920원을 공제한 금액인 39,225,072원(= 100,321,992원 - 61,09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물품대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거래기간 동안의 할인금액이 21,564,33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100,321,992원에 상당하는 유기제품을 원고에게 모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받는자를 F로 하여 2022. 8. 9. 합계금액 32,488,817원(공급가액 29,535,288원, 세액 2,953,529원)인 세금계산서를, 2022. 8. 9. 합계금액 41,033,176원(공급가액 37,302,887원, 세액 3,730,289원)인 세금계산서를, 2022. 9. 30. 합계금액 26,800,000원(공급가액 24,363,636원, 세액 2,436,364원)인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가 임의로 발행할 수 있는 점, 피고가 발행한 위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의 실질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100,321,993원(= 32,488,817원 + 41,033,176원 + 26,800,000원) 상당의 유기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225,072원 및 이에 대하여 선금 지급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마지막으로 유기제품을 공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22. 9.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석문

1) G 주식회사에서 2022. 6. 2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는데, 법인등록번호 H로는 피고와 G 주식회사가 여전히 독립하여 존속 중인 것으로 되어 있다.